

# 무배당 Chubb 가정종합보험1907 상품요약서

## 1. 문답식 상품해설

Q. 도난에서 일반가재와 명기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일반가재는 아래에서 정한 각 호의 물건을 제외한 주택구내의 가재를 말하며,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명기가재는 아래에서 정한 물건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말합니다.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화상 종합병원입원일당보장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란 무엇인가요?

A. 화상 종합병원입원일당보장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증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① 무배당 Chubb 가정종합보험1907는 주택용 화재보험입니다.
- ②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 구분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br>납입기간 | 보험료<br>납입주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li> <li>- (기본계약)도난보장(주택)</li> <li>-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li> <li>- 풍수재보장 특별약관(비특수건물)</li> <li>-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li> <li>-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Ⅱ 특별약관</li> <li>-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특수건물) 특별약관</li> <li>-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li> <li>-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li> <li>-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li> <li>-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li> <li>-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li> <li>-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li> </ul>   | 10년만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중 강력범죄 사망 및 피해보장 특별약관</li> <li>-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20%이상후유장해보장</li> <li>-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li> <li>- (기본계약)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장</li> <li>- 화재·붕괴·침강·사태사망보장 특별약관</li> <li>- 화재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li> <li>- 붕괴·침강·사태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li> <li>-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li> <li>-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5대골절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화상 입원일당보장(4일이상 60일한도) 특별약관</li> <li>- 화상 종합병원입원일당보장(4일이상 60일한도) 특별약관</li> <li>-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li> <li>-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li> <li>-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li> <li>-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li> <li>-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li> <li>-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li> <li>-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li> <li>-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li> <li>-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li> <li>-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li> <li>- 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li> <li>- 스쿨존 자동차사고벌금보장(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li> <li>-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Ⅱ 특별약관</li> <li>-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 특별약관</li> <l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Ⅱ 특별약관</li> </ul> | 10년만기 | 20~70세 | 전기납         | 월납<br>연납    |

|                        |  |  |  |
|------------------------|--|--|--|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 특별약관 |  |  |  |
| - 가족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        |  |  |  |

④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0%(연복리)
- ②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   |  |                                   |
| (1) 화재손해보장                  | 화재손해<br>(주택)                                  |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                             | 잔존물<br>제거비용                                   |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br>※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실는 비용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장                 |
| (2)붕괴·침강·사태<br>손해보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
| (3)소요노동쟁의<br>손해보장           |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협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장  |                                   |
| (기본계약)도난(주택)보장              |   |  |                                   |
| (5)도난(주택)보장                 | 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도난(주택)보장금액 한도 실손보상                |
|                             | 명기가재  |  |                                   |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br>20%이상후유장해보장 | 사망보험금   | 일반상해로 사망시  | 일반상해사망20%이상후유장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                             | 2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20%이상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사망20%이상후유장해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본계약)일반상해80%<br>이상후유장해보장   | 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
| (기본계약)일반상해50%<br>이상후유장해보장   | 5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장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
| 화재·붕괴·침강·사태상<br>해사망보장특별약관   | 화재·붕괴·침강·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 특약가입금액                            |
| 화재후유장해보장특별<br>약관            | 고도후유장해  | 화재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보장명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일반후유장해  | 화재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지급률                      |       |
| 붕괴·침강·사태상해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 고도후유장해  | 붕괴·침강·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 일반후유장해  | 붕괴·침강·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지급률                      |       |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 사망 및 피해보장 특별약관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   | 특약가입금액의 100%                    | 500만원 |
|                                    |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 특약가입금액의 2%                      | 100만원 |
|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 특약가입금액                          |       |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   | 특약가입금액                          |       |
| 5대골절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br>※ 5대골절: 머리의 으깬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 특약가입금액                          |       |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로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특약가입금액                          |       |
|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 특약가입금액                          |       |
| 화상입원일당보장(4일이상 60일한도) 특별약관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       |
| 화상종합병원입원일당보장(4일이상 60일한도) 특별약관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4일이상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br>※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  |      |                  |  |
| 화재배상책임보장<br>특별약관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 | 사망<br>부상<br>후유장해 | 1억원 한도<br>2천만원 한도<br>1억원 한도  |
|  |  | [대물] |                  |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br>한도  |
|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br>별약관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 풍수재보장특별약관<br>(비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br>※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풍수재보장특별약관<br>(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br>※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      |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 지진손해보장<br>특별약관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문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장<br>※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br>: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br>-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br>: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 6대가전제품<br>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br>부담금 2만원)<br>특별약관  |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br>실제수리비용 보상<br>(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신6대가전제품<br>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br>부담금 2만원)<br>특별약관 |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신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br>실제수리비용 보상<br>(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12대가전제품<br>고장수리비용보장<br>(자기부담금 2만원)<br>특별약관 |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br>실제수리비용 보상<br>(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급배수설비누출<br>손해보장특별약관                        | 보험목적의 구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br>특별약관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자출한) 경우  |      |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민사소송법률비용<br>보장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      |                  | - 변호사비용<br>: 1,500만원한도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r>-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 부동산소유권<br>법률비용보장<br>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br>(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r>-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 임대차보증금<br>법률비용보장<br>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br>(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r>-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            |
|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            |
|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II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1인당 보상)   | 사망   | 1억 5천만원 한도 |
|                                      |  | 부상   | 3천만원 한도    |
|                                      |  | 후유장애   | 1억 5천만원 한도 |
|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한도  |            |
| 자동차사고별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 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br>(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
| 스쿨존 자동차사고별금보장 (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 받은 벌금액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 1,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II 특별약관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sup>1)</sup> 를 사망하게 한 경우  | 5,000만원 한도   |            |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  | 70일~139일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피해자 <sup>1)</sup> 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 140일 이상 진단시<br>5,000만원 한도  |            |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sup>1)</sup>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            |
| 교통사고<br>처리지원금보장Ⅲ<br>특별약관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sup>1)</sup> 를 사망하게 한 경우   | 10,000만원 한도  |            |
|                             | 자동차 운전 중<br>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br>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br>피해자 <sup>1)</sup> 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br>시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   | 70일~139일 진단시   | 5,000만원 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10,000만원 한도  |            |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sup>1)</sup>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0,000만원 한도  |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보장Ⅱ<br>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1,000만원 한도   |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br>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2,000만원 한도   |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br>특별약관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일당 10만원한도<br>(90일한도)  |            |
| 가족화재별금보장<br>특별약관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br>: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br>-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br>: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

##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③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기본계약)도난(주택)보장, 자동차사고별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스쿨존 자동차사고별금보장(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풍수재보장특별약관(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지진손해보장, 화재별금보장, 가족화재별금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홀인원비용보장, 알바트로스비용보장,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3) 적용위험률

|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
|                    | 남자       | 여자       |
| 화재손해(단독주택 1급 기준)   | 0.000157 |          |
| 도난손해(일반가재)         | 0.000328 |          |
| 일반상해사망(1급, 40세 기준) | 0.000216 | 0.000102 |

##### 【적용위험률이란?】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5.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100”

|  |               |
|--|---------------|
| 보험가격지수(남자/여자)(%) <40세, 상해1급, 아파트 1급(100m2), 10년만기 전기납> | 112.1 / 112.3 |
|--|---------------|

##### 【보험가격지수란?】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7.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해지환급금

- 가입기준 : 남자 1급, 40세, 월납 12,910원, 10년만기, 10년납, 아파트 1급
- 보통약관 : (기본계약)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 2억원, (기본계약)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 5천만원, (기본계약)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1천만원,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20%이상후유장해보장 1억원, (기본계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3천만원, (기본계약)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장 3천만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해지환급률(%) |
|------|-----------|----------|----------|
| 1년   | 154,920   | -        | 0.0      |
| 3년   | 464,760   | -        | 0.0      |
| 5년   | 774,600   | -        | 0.0      |
| 7년   | 1,084,440 | 6,080    | 0.6      |
| 10년  | 1,549,200 | -        | 0.0      |

###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up>SM</sup>**